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060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4년 08월 12일
4. 회부일자 : 2024년 08월 14일

## II.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 산하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두고 있음.
- 이에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III. 주요내용

1. 대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2. 주요사무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 3. 추진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4. 출연의 필요성

-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

## IV.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 예산조치 : 2025년 예산편성

###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1.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sup>1)</sup>에 따라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 2. 서울신용보증재단 현황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 보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1999.6.)됨.
- 현재 동 재단은 본부(2부문 2실 6부 3센터)와 지점(4지역본부 25지점 6센터)에 정원 476명과 정원의 기간제 근로자 173명을 포함한 총 649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

#### < 서울신용보증재단 인력 현황 >

(2024.6월 말 기준)

구 분	정 원 內					정 원 外		합 계
	소 계	임 원	일반직	전문직	지원직	소 계	기간제 근로자	
현 원(명)	476	3	411	27	35	173	173	649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동 재단의 사업은 고유사업, 대행사업, 수탁사업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음.

### < 주요사업 >

구분	주요사업	재원
고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li> <li>◦ 구상권 관리</li> <li>◦ 기본재산 관리</li> <li>◦ 경영 지도(창업·경영 컨설팅)</li> </ul>	출 연 금
대행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li> <li>◦ 소상공인 종합지원</li> <li>◦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li> <li>◦ 청년골목창업 지원</li> <li>◦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li> <li>◦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li> </ul>	대행사업비
수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li> </ul>	수탁사업비

### 3. 출연의 적정성 검토

- 서울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sup>2)</sup>와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sup>3)</sup>에 근거하여 동 재단에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있음.

- 동 재단에 대한 서울시의 출연금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코로나19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3)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
5.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출연금을 대폭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강화된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출연금 내역4) >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출 연 금	66	810	1,442	759	168	342
신용보증 재원	66	810	809	534	100	189
보증료 재원	-	-	393	225	68	153
기타	-	-	브릿지보증 240	-	-	-

- 그리고 2025년에는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해 신용보증 재원 목적의 출연금 417억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이는 내년도 신규보증에 대한 예상 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산출 내역 >

<p>▶ 출연금(신규보증 예산손실액 417억) = ①신규보증 총손실 발생액(1,600억원) - ②손실보전액(1,183억원)</p> <p>① 신규보증 총손실 발생액(1,600억원) = 신규보증(20,000억원) X 신규보증 부실발생률 목표치(8.0%)</p> <p>② 손실 보전액(1,183억원) = 자구노력(채권회수) 480억원 + 정부보전(재보증) 560억원 + 금융회사보전(법정출연) 143억원</p>
--

- 이를 통해 동 재단은 2025년 신규보증 2조원과 기보증의 기한연장 등 9,000억원을 포함한 2조 9,000억원을 공급하고, 운용배수<sup>5)</sup>를 9배수로 안정화할 계획임.

4) 서울시를 통한 국비보조금 2020년(100억원), 2021년(93억원) 제외

5) 운용배수란 보증잔액을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로 나눈 값으로, 동 재단이 지원가능한 보증공급 규모를 의미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는 최대 운용배수를 15배 이내로 정하고 있음.

### < 연도별 운용배수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예상)	2025년(예상)
보증공급액	41,113	31,349	28,000	29,000
보증잔액 (A)	106,983	97,313	87,000	76,000
연간 출연금 조성액	1,702	1,191	979	1,170
서울시	534	100	<b>189</b>	<b>417</b>
정 부	338	129	1	-
자치구	150	113	50	50
금융회사법정출연	115	120	138	143
금융회사 등 협약출연	565	729	601	560
당기순손실	810	1,512	1,859	1,29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13	-
기본재산(B)	9,785	9,477	8,584	8,460
운용배수(A/B)	10.93	10.27	10.14	9.00
▶ 기본재산 = 전년도 기본재산+당해연도 출연금-당해연도 당기순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순자산보정) ▶ 상기 내용은 업무계획 등에 기반한 예상 수치이며, 보증공급 및 부실 발생 추이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최근 IMF 등 국제기구의 전망<sup>6)</sup>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성장·고용·금융 부문의 불확실성 등으로 저성장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소비 여력 약화, 소상공인 채무부담 증가, 지속되는 내수침체 등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올해 2/4분기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 기준)<sup>7)</sup>는 전년 동분기 대비 2.9%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업 생산지수(불변지수 기준)<sup>8)</sup>는 전년 동분기 대비 1.6%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각각 2.1%, 1.8% 감소하는

#### 6) < 국제기구의 경제성장률 전망 >

구분	IMF(2024.7월 전망)		OECD(2024.5월 전망)		WB(2024.6월 전망)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세계	3.2	3.3	3.1	3.2	2.6	2.7
한국	2.5	2.2	2.6	2.2	미전망	

- 7) 소매판매점의 매월 판매금액을 기준시점(2020년)과 비교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경제활동의 수요측면을 나타내는 지표
- 8)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활동 수준을 지수화하여 산출한 경제지표

등 소상공인과 연관성이 큰 분야에서 내수 침체가 나타나고 있음(“2024. 2/4분기 지역경제동향”, 통계청, 2024.8.).

- 이처럼 내년도 국내외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동 재단은 공공의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보증지원과 재무건전성 유지라는 상반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서울시 출연규모에 따른 2025년 운용배수 전망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출연규모와 관계없이 10배수 이내의 운용배수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정 출연규모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sup>9)</sup>.

〈 서울시 출연규모에 따른 2025년 운용배수 전망 〉

(단위 : 억원)

구 분	출연금액				
	미출연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417억원 (요구액)
보증공급액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A) 보증잔액	76,000	76,000	76,000	76,000	76,000
(B) 기본재산	8,043	8,143	8,243	8,343	8,460
<b>운용배수=(A/B)</b>	<b>9.4</b>	<b>9.3</b>	<b>9.2</b>	<b>9.1</b>	<b>9.0</b>
연간 출연금 조성액	753	853	953	1,053	1,170
서울시	-	100	200	300	417
정 부	-	-	-	-	-
자치구	50	50	50	50	50
금융회사 법정출연	143	143	143	143	143
금융회사 등 협약출연	560	560	560	560	560

- 한편 동 동의안 제출 이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울시(예산담당관)의 조정을 거치면서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해 제출된 재단 출연금은 보증료 재원 140억 2천 5백만원으로 동 동의안에 명시된 신용보증 재원 417억원은 전액 감액됨.

9) “리스크 요인 및 기본재산 기반의 적정 신용보증 규모 분석”(한국경제학회, 2021.7.)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 재단의 적정운용배수는 경기상황에 따라 8.07배 ~ 9.83배로 추정됨.

- 보증료 재원은 서울시 일부 정책자금 보증 시 소상공인 등이 납부하는 보증료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재산 전입 목적의 신용보증 재원과 구분됨.
- 서울시는 보증료 재원과 신용보증 재원을 동일과목인 “출연금” 으로 교부(목적 구분)하나, 재단 회계에서는 보증료 재원은 “출연금수익(손익 거래)” 으로, 신용보증 재원은 “출연금(자본거래)” 으로 각각 별도 계상함.<sup>10)</sup>

<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 비교 >

구분	편성목적	편성액	서울시 예산과목	재단 회계
출연 동의안	신용보증 재원	417억원	출연금 (목적 구분)	출연금(자본거래)
예산안	보증료 재원	140억 2천 5백만원		출연금수익 (손익거래)

-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동 동의안이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임.
-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부터 지속되어왔던 것으로, 시의회의 출연 동의안의 심의는 궁극적으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출연 사업의 효과성, 출연 규모의 적정성, 법적 근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연 여부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출연

10)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출연금 회계처리 통일

- 출연금은 기본재산전입목적과 사업운영비재원목적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함
  - 기본재산전입 목적의 출연금 : 재무상태표 자본금의 ‘기본재산’으로 처리 (자본거래로 처리)
  - 사업운영비재원 목적의 출연금 : 손익계산서 사업수익의 ‘출연금수익’으로 회계처리 (손익거래로 처리)
- 자치단체 주관부서는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 및 출연금 교부 시, 출자금 및 출연금 성격을 기본재산 전입 목적(재산형성)과 기관운영비재원(경상비)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서 교부

규모에서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출연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 시의회의 심의권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최근 5년간 서울시 출연금 관련 동의안-예산안 간 편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동의안	예산안	차액	동의안	예산안	차액	동의안	예산안	차액	동의안	예산안	차액	동의안	예산안	차액
출연금	9,000	9,000	-	76,300	11,860	△64,400	63,000	57,400 <sub>11)</sub>	△5,600	63,000	16,800	△46,200	46,300	22,800	△23,500

- 따라서 서울시는 동 출연 동의안을 비롯한 서울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동 동의안에 따른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는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심의 확정분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

입법조사관	연락처
김혜진	02-2180-8057

11) 본예산 확정액 : 65,900백만원